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 6. 22(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강현삼 의원

나.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2년 6월 1일
- 회부일자 : 2012년 6월 5일

다. 상정일자 : 2012년 6월 14일

-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복지위원회 강현삼 의원)

가. 제안이유

- 도내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선진복지도 실현
- 진폐로 추정되는 산재불인정 받고 있는 도내 진폐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 추진

나. 주요내용

-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적절한 시책 추진(안 제3조)
-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수행 경비 지원(안 제5조)
- 진폐근로자의 중복지원 금지(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홍범희)

- 진폐로 추정되지만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진폐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도내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진폐단체”란 충청북도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4. “분진작업”이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작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 및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활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2. 주거환경 개선사업
3. 진폐단체 운영지원사업
4. 그 밖의 도지사가 진폐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진폐근로자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진폐근로자 및 진폐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진폐예방과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진폐(塵肺)의 예방과 분진작업(粉塵作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진폐예방 등에 관한 계획)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하 "진폐예방 등에 관한 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제8조(진폐의 예방) 사업주와 근로자는 진폐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광산보안법」에서 정하는 조치에 의해 분진의 발산방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분진작업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3.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6.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